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 2026-026호) 제5조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산업통상부장관

1. 관련 규정

-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조제1호 "나프타"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나프타를 말한다.

* 대상품목명: 나프타(HSK: 2710.12-4000)

제5조(수출제한) 나프나 사업자 등을 포함한 나프타 관련 사업자,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나프타를 수출할 수 없다.

※ 관세법 제2조제3호 반송 및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에서의 외국물품 간 혼합제품은 수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수출신고 시 외국물품 간 혼합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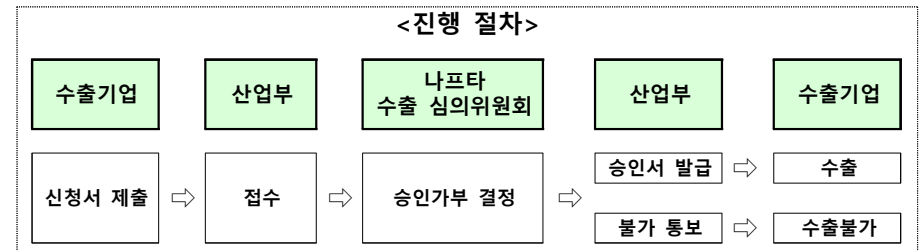
2. 수출승인 대상

-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나프타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수출승인 절차

- 수출기업은 산업통상부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서와 국내 사용이 불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 등 수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산업통상부는 「나프타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자료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4. 수출승인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044-203-4928~9, nj503@korea.kr)

수출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수출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내용	HS번호	품명		
	수량(L)	중량(KG)		
	금액	대금결제방식		
상대방 (수입자)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승인내용	승인번호	유효기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 및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나프타 수출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